

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

- 전부개정 2009년 5월 14일 조례 제1026호
(제명개정 포함)
- 개정 2010년 5월 10일 조례 제1100호
- 일부개정 2014년 5월 2일 조례 제1358호
(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)
- 일부개정 2014년 12월 11일 조례 제1383호
-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4호
- 일부개정 2019년 4월 9일 조례 제1715호
(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)
- 일부개정 2020년 9월 28일 조례 제1833호
- 전부개정 2021년 9월 24일 조례 제1941호
- 일부개정 2022년 11월 17일 조례 제2013호
- 일부개정 2023년 7월 17일 조례 제2070호
(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)
- 일부개정 2023년 7월 17일 조례 제2081호
- 일부개정 2024년 9월 25일 조례 제2194호
- 일부개정 2025년 9월 19일 조례 제2306호
(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)
- 일부개정 2025년 11월 20일 조례 제2321호
- 일부개정 2025년 11월 20일 조례 제2329호
(인구정책 기본 조례)
- 일부개정 2026년 4월 6일 조례 제2355호
- 일부개정 2026년 4월 6일 조례 제2361호
(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6. 4. 6>

1. “체육시설”이란 오산시장이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·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따른 부속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.
2. “개인사용”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3. “전용사용”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

는 것을 말한다.

4. “사용료”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5. “관내이용자”란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 및 직장(학교)에 재직(재학)중인 자를 말한다. 단, 단체의 경우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전단의 관내 이용자인 경우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오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사용신청 및 허가)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제한 여부,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인사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신청 및 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체육·문화교실을 개설·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을 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의 우선순위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.

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2. 체육·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행사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4. 오산시에 소재지를 둔 직장인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
5. 경기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

6.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, 공연, 관람, 전시 행사 등

제6조(장애인에 대한 사용의 우선순위 특례) 시장은 오산시장애인체육회(가맹단체를 포함한다), 장애인단체, 장애인체육 동호회 등이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7조(사용의 취소 및 정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2. 시설의 유지·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5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사용시간)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사용시간 안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1. 주간 : 06:00~18:00
2. 야간 : 18:00~22:00

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용신청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신청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2.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. 이 경우 행사나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, 상황적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일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사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대해서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한다. 다만, 관내이용자가 아닌 경우 전용 및 개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. <단서신설 2026. 4. 6>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. 다만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전 월분 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.

③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.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.
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시장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용사용료를 감면한다. <개정 2022. 11. 17, 2025. 11. 20>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: 전부 면제(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)
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

나. 오산시체육회·오산시장애인체육회(회원단체 포함) 및 오산시 스포츠클럽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

2. 영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행사(제10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: 80퍼센트 감경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: 50퍼센트 감경

가. 영 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및 활동

나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

다.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

라. 「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유·청소년대상 훈련·경기

마. 오산시 문화·예술 진흥을 위하여 (사)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사용료를 감경한다. <개정 2022. 11. 17, 2023. 7. 17, 2025. 9. 19, 2025. 11. 20, 2026. 4. 6>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: 50퍼센트 감경

-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나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다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라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마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바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사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아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- 자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- 차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- 카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타. 「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
- 파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: 30퍼센트 감경

- 가. 삭제 <2025. 11. 20>
- 나. 「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(다만,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.)

3.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: 10퍼센트 감경

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: 5퍼센트 감경

가. 「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제25조제4항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

나. 「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

다. 「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 한 가지만 적용하며,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

1.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

가. 사용 20일 전까지 : 사용료 전액 반환

나. 사용 10일 전까지 :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

다. 사용 전일까지 :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

2.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: 사용료 전액 반환

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한다.

제12조(관람권)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관람권(입장권,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)을 발행할 수 있다.

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. 다만, 관람권 수입총액이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1.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 :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

2.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: 관람권 수입총액의 15퍼센트

제13조(사용자의 책임)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

시설물 등을 파손·분실·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.

제14조(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)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
제15조(체육지도자 배치)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에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.

제16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7조(시설의 개방 등) ① 시장은 시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오산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.

1. 시설별 사용 기간·시간 및 사용수칙
2. 시설별 사용료
3.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

② 시장은 경기대회 개최 또는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오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해야 한다.

부칙 <2021. 9. 24 조례 제1941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22. 11. 17 조례 제201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3:3농구장,야구장, 궁도장 사용료 관련 부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7. 17 조례 제2070호,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

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

기본 조례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제10조제2항제4호가목 중 “「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」”를 “「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제25조제2항”으로 개정한다.

② 및 ③ 생략

부칙 <2023. 7. 17 조례 제2081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“오산문화스포츠센터”를 “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”로 한다.

별표 2 중 “오산문화스포츠센터”를 각각 “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”로 한다.

부칙 <2024. 9. 25 조례 제219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5. 9. 19 조례 제2306호,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타목 중 “예우대상자”를 “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”으로 한다.

② 부터 ⑦ 까지 생략

부칙 <2025. 11. 20 조례 제232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5. 11. 20 조례 제2329호, 인구정책 기본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2호나목 중 “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”를 “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”로 한다.

⑦ 부터 ⑨ 까지 생략

부칙 <2026. 4. 6 조례 제2355호>

이 조례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6. 4. 6 조례 제2361호,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4호가목 중 “「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제25조제2항”을 “「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제25조제4항”으로 한다.

③ 부터 ⑤ 까지 생략

[별표] <개정 2026. 4. 6>

체육시설 사용료(제9조 관련)

1. 체육시설 전용사용료

(단위 : 원)

시 설 구 분	사용구분	체육경기		체육경기 외 행사		
		평 일	토·공휴일	평 일	토·공휴일	
종합운동장	주 간	40,000	50,000	60,000	80,000	
	야 간	50,000	70,000	120,000	150,000	
인조잔디구장	주 간	30,000	40,000	40,000	60,000	
	야 간	40,000	50,000	70,000	90,000	
대체육관 (2,000㎡이상)	주 간	70,000	90,000	150,000	200,000	
	야 간	90,000	120,000	200,000	250,000	
소체육관 (2,000㎡미만)	주 간	25,000	30,000	50,000	60,000	
	야 간	40,000	60,000	100,000	120,000	
수영장	주 간	400,000	600,000	800,000	1,000,000	
	야 간	600,000	800,000	1,000,000	1,200,000	
인라인스케이트장	주 간	20,000	30,000			
	야 간	30,000	40,000			
풋살장 (인조잔디,면당)	주 간	15,000	15,000			
	야 간	20,000	20,000			
테니스장 (면 당)	실외	주 간	10,000	12,000		
		야 간	12,000	15,000		
	실내	주 간	20,000	25,000		
		야 간	25,000	30,000		
배드민턴장 (면 당)	주 간	10,000	15,000			
	야 간	15,000	20,000			
3:3 농구장 (면 당)	주 간	10,000	10,000			
	야 간	15,000	15,000			
야구장	주 간	50,000	60,000			

공도장	주 간	15,000	20,000		
파크골프장	주 간	50,000	80,000		
다목적실	주 간	50,000	70,000	50,000	70,000
	야 간	70,000	90,000	70,000	90,000
	전 시			70,000	100,000
문화강의실	주 간			15,000	20,000
	야 간			20,000	30,000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인조잔디구장은 오산스포츠센터 보조축구장, 죽미체육공원 다목적구장을 포함한다. 2.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(다만, 수영장 1회 4시간, 야구장 3시간으로 한다.) 3. 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20/100을 가산한다. 4.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. 5. 다목적실(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) 전시의 경우 1일(운영시간)을 기준으로 한다. 6. 파크골프장의 경우, 개인 단독 사용이 아닌 대회 등의 공식 행사에 따른 대관 신청에 대해서만 허가한다. 				

1-1. 체육시설 전용사용료(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분할사용)

(단위 : 원)

시 설 구 분		사용구분	체육경기		체육경기 외 행사	
			평 일	토·공휴일	평 일	토·공휴일
대 체 육 관	농구장	주 간	20,000	30,000		
		야 간	30,000	40,000		
	배드민턴장	주 간	10,000	15,000		
		야 간	15,000	20,000		
	탁구장	주 간	10,000	15,000		
		야 간	15,000	20,000		
다목적실		주 간			30,000	40,000
		야 간			40,000	50,000
비 고	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회(면)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20/100을 가산한다. 3.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. 				

2. 체육시설 개인사용료

(단위 : 원)

이용시설	구 분	이용기준		비 고
		1일이용	월이용료	
수영장	어 른	3,500	주3회강습 66,000 주2회강습 55,000 자유정기 55,000	○ 회원은 1개월기준 -1일 1회 ○ 주5일 이용(월~금) -토,일요일:자유수영 (입장권 구입) ○ 어린이 평일자유수영 불가 ○ 단체는 20명이상 (20퍼센트 할인)
	군 인 청소년	3,000	주3회강습 55,000 주2회강습 44,000 자유정기 44,000	
	어린이	2,500	주3회강습 33,000 주2회강습 22,000	
체력단련장	어 른 군 인	3,000	44,000	○ 1회 2시간 ○ 주5일 이용(월~금) -토,일요일:입장권구입
	청소년	2,500	33,000	
인공암벽장	어 른 청소년 어린이	4,000	-	○ 1회 4시간 ○ 단체는 20명이상 (20퍼센트 할인)
골프연습장	어 른 군 인	9,000	주3회강습 180,000 주2회강습 120,000 자유정기 95,000	○ 1회 1시간 ○ 강습:최대4명 -1인 15분 개인강습
	청소년 어린이	7,000	주3회강습 150,000 주2회강습 100,000 자유정기 75,000	
인라인 스케이트장	어 른 군 인	주간 1,500 야간 2,000	15,000	○ 1일 1회 ○ 단체는 20명이상 (20퍼센트 할인)
	청소년	주간 1,000 야간 1,000	10,000	
	어린이	주간 500 야간 1,000	5,000	

테니스장	실외	어 른	주간 2,000 야간 2,500	25,000	○1회 2시간
		청소년 어린이	주간 1,500 야간 2,000	20,000	
	실내	어 른	주간 4,000 야간 4,500	40,000	
		청소년 어린이	주간 3,000 야간 3,500	30,000	
배드민턴장	어 른	1,500	30,000	○1회 2시간	
	청소년 어린이	1,000	23,000		
궁 도 장	어 른	1,000	20,000	○1회 2시간	
	청소년 어린이	800	15,000		
파크골프장	어 른	3,000	-	○1인 1회, 9홀 기준	
	청소년 어린이	2,000			
프로그램 (생활체육교실 문화강좌교실)	어른기준	-	15,000~120,000	○과목당(1개월) 기준	
공통사항	○어린이 : 12세 이하인 사람 ○청소년 :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○군 인 :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 ○어 른 : 19세 이상인 사람				
비 고	1. 이용시간과 이용횟수에 따라 이용료 기준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2. 이용료를 책정할 경우 인근지역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유사한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감안한다. 3. 감면대상자의 경우 본인의 이용료만 감면되며, 교재·재료비는 감면하지 아니한다.				

3. 부대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	사용기준	사 용 료	비 고
라 시 (조 명 탑)	이 트 설	1회	50,000	종합운동장
		1회	30,000	인조잔디구장
전 광 관		1회	100,000	
무 대 설	무 대 조 명	1회	40,000	무대장치 작업 및 시설준비는 50%
	기 본 무 대	1회	30,000	고정식·이동식 단상
	전 동 무 대	1회	50,000	무대아래 전동식 보조무대(대체육관)
음 향 설	앰 프 사 용	1회	30,000	유선마이크(2개기본)
	무 선 마 이 크	1채널	10,000	무선마이크 (핀마이크포함, 1개)
전 기 · 조 명		1회	30,000	대체육관
			20,000	소체육관
냉 · 난 방		1시간	40,000	대체육관,수영장
			20,000	소체육관,다목적실
			10,000	문화강의실
기 타 의 설	식 당	1일	30,000	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
	스 코 어 보 드 (소형LED)	1회	20,000	이동식 또는 간이 점수표시기
	빔프로젝트	1회	20,000	영화상영시 사용료면제
	아 취 설 치	1일	20,000	
	현 수 막	1건	10,000	
	접 의 자	1개	200	이동식접의자 등
1. 1회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(단, 1일은 전용사용허가 시간 이내임) 2. 운영·설치 인원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하며, 사용종료 후 원상태로 회복한다. 3.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은 상기내용을 준용한다. 4. 삭제 <2026. 4. 6>				

4. 상업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사용기준	사 용 료
영 화 촬 영	주 간	100,000
	야 간	150,000
애 드 별 료 등 이 와 유 사 한 부 양 광 고 물	1일 1개	10,000
선 전 또는 부 착 광 고 물 (10m×1m 진 열 기준)	1년간	500,000
	5일이내	100,000
	1일 초과마다	10,000
프 로 그 램 선 전 책 자 판 매	판매부수×1부당 가격	판매금액의 20%
기 타 물 품 대 여 (판 매 대 여)	(매출금액-원가)×판매량	판매이익의 20%

5. 중계방송료

(단위 : 원)

구 분		TV 등 동 영상 중 계 방 송	라 디 오 등 음 성 중 계 방 송	ARS(전화) 또는 인 터 넷 문 자 서 비 스
체 육 경 기	국 제	100,000	50,000	10,000
	국 내	70,000	40,000	10,000
체 육 이 외 사	국 제	-	-	20,000
	국 내	150,000	100,000	20,000
비 고	1. 방송장비는 사용자 측에서 설치·운용한다. 2.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경기는 1경기(게임)을 기준으로 한다. 3. TV 녹화,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% 징수함			